

한국ESG기준원

2023 주주총회 리뷰(3)

- 국내 여성이사 선임 현황 분석

2023. 08. 28.

책임투자본부 책임투자팀 구현지 연구원(white07@cgs.or.kr)

- ▶ 국제적으로 여성이사의 의무 선임이 법제화되는 추세에서,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법인에 대해 여성이사 1인 이상을 의무 선임하도록 하였으며, 동 법안의 유예기간이 최근 종료됨
- ▶ 또한, 글로벌 기관투자자 및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 등에서 의결권 행사 시 이사회 내 성별 다양성을 고려하는 내용의 지침을 추가하는 등 여성이사 선임에 대한 자본시장의 요구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 따라서 한국ESG기준원에서는 국내 상장기업의 최근 5년간 여성이사 선임 추이에 대해 살펴보고, 개정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 기업을 중심으로 여성이사 관련 세부 현황을 점검해보고자 함
- ▶ 분석기간 동안 국내 상장기업 전반적으로 여성이사의 선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관찰되며,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기업들에서 그 증가폭이 더욱 크게 나타남
- ▶ 2023년 정기 주주총회 종료 시까지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 기업 중 여성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기업은 10사로 확인되며, 투자자들은 해당 기업들의 여성이사 선임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서론

- 이사회 성별 다양성 제고에 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미국, 유럽, 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 이사회 내 여성이사 선임을 의무사항으로 도입하고 있음
 - 유럽은 여성이사 할당제에 관해 가장 선제적으로 의무화 및 제재 규정을 도입하였으며, 프랑스의 경우 이사회의 40% 이상을 여성이사로 하고 미준수 시 여성을 제외한 이사들의 임명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규정을 충족할 때까지 보수 지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엄중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음
 -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여성이사 할당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2019년까지는 여성이사를 1인 이상¹⁾ 선임하도록 하고 2021년까지는 4인 이하 이사회의 경우 1인 이상, 5인 이사회의 경우 2인 이상, 6인 이상 이사회의 경우 3인 이상을 선임하도록 하였으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 달러(두 번째 위반부터 3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1) 이사회의 이사 총수를 불문하고 여성이사 1인을 선임하도록 함

-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에 따라 한국에서도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이사회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하지 않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루어짐
 - 다만, 한국의 경우 앞서 기술한 유럽, 미국 등의 국가와 달리 미준수 시 구체적인 제재 부과 등의 강행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 개정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이사회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에 대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첫 정기 주주총회 시점이 종료됨에 따라, 적용 대상인 기업들의 개정 법안 준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동법은 2022년 8월 유예기간이 종료되었으며,³⁾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주권상장법인(금융회사의 경우 자본총액과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함) 중 이사회가 남성 이사만으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최소 1인 이상의 여성 등기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함
- 또한, 법적 규제화 외에도 글로벌 기관투자자 및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에서 의결권 행사 시 이사회 성별 다양성을 고려하는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포함하면서 국내 상장기업들이 이사회 성별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임
- BlackRock은 이사회에 여성이사가 없을 경우 이에 책임이 있는 이사의 재선임에 반대할 수 있다는 지침을 보유하고 있음⁴⁾
 - ISS는 이사회 성별 규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사회추천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시니어 구성원 등 이사 후보 추천에 책임이 있는 자의 선임을 반대할 것을 권고하고⁵⁾, Glass Lewis는 이사회추천위원회 의장 또는 이사회 의장의 선임을 반대할 것을 권고함⁶⁾
 - 한국ESG기준원은 2023년 2월 6차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가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할 경우 다수 성(性)에 해당하는 모든 이사 후보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함⁷⁾
 - 이처럼 이사회 다양성 확보에 대한 자본시장의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본 리뷰에서는 국내 상장사 전체의 최근 5년간 여성이사 선임 추이를 살펴보고, 개정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금까지의 여성이사 선임 여부 및 선임된 여성이사의 세부 현황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함

2) 이사회 성별 구성 관련 각국의 규제와 국내 현황, 자본시장포커스 2020-02호, 홍지연, 2020.01.21.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부칙 제1조에 따르면, 해당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에 따르면, 법 시행 당시 개정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은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적합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BlackRock Investment Stewardship Proxy voting guidelines for Asia, BlackRock, 2023.01.

5) KOREA Proxy Voting Guidelines Benchmark Policy Recommendations, ISS, 2022.12.

6) 2023 Policy Guidelines, Glass Lewis, 2022.

7) K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KCGS, 2023.02.

국내 상장기업의 최근 5년간 여성이사 선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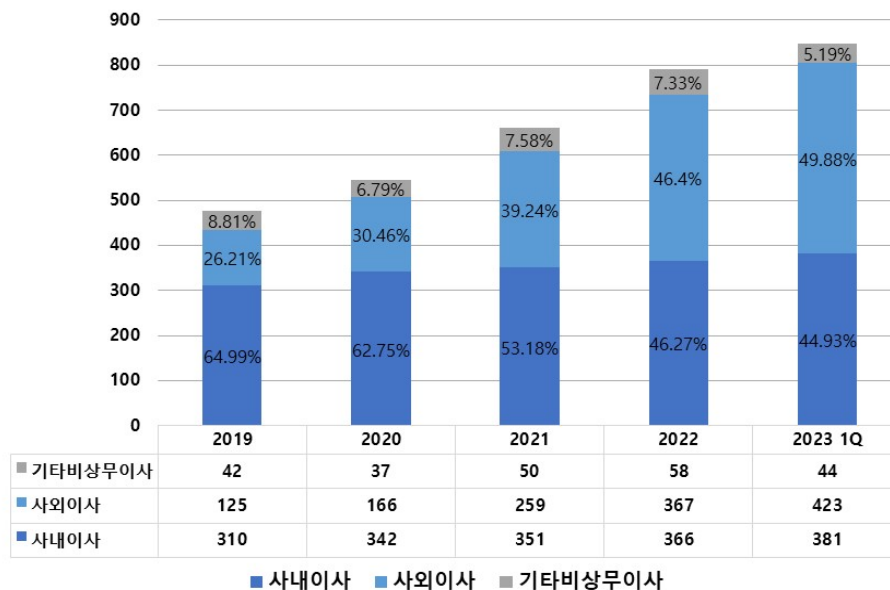
- 2019년부터 2023년 1분기⁸⁾까지(이하 ‘분석기간’) 전체 상장기업(유가증권, 코스닥 시장)에서 여성이사를 선임한 기업의 수와 해당 기업들에 재임 중인 여성이사의 수 모두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19년에 여성이사를 선임한 상장기업의 수는 409사(19.22%)이었던 것에 비하여, 2023년 1분기에는 677사(28.91%)까지 증가함
 - 동기간 전체 상장기업에 재임 중인 여성이사의 수는 477명(4.26%)에서 848명(6.78%)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함
 - 직위별(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여성이사 선임 현황을 살펴보면 분석기간 동안 여성 사내이사의 수는 약 20% 증가한 것에 반해 여성 사외이사의 수는 약 3.5배 수준으로 대폭 증가함

[표 1] 전체 상장기업의 여성이사 선임 현황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분기
전체 상장기업 수(사)	2,128	2,230	2,330	2,446	2,342
여성 등기이사를 선임한 상장기업 수(사)	409	458	536	635	677
여성 등기이사 선임 기업 비율(%)	19.22%	20.54%	23%	25.96%	28.91%
전체 상장기업의 등기이사 수(명)	11,194	11,688	12,221	12,843	12,509
여성 등기이사 수(명)	477	545	660	791	848
여성 등기이사 비율(%)	4.26%	4.66%	5.4%	6.16%	6.78%

출처: 각 회사 2019~2022년 사업보고서, 2023년 1분기 보고서, DART

[그림 1] 전체 상장기업의 직위별 여성이사 수 및 비율



출처: 각 회사 2019~2022년 사업보고서, 2023년 1분기 보고서, DART

8)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각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2023년 1분기는 분기보고서 기준임

- 개정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 기업(이하 ‘적용 대상 기업’)과 미적용 기업을 나누어 여성이사 선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및 그림에서와 같이 적용 대상 및 미적용 기업 모두에서 여성이사 선임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다만 적용 대상 기업의 경우, 여성이사를 선임한 기업은 2019년에 30사(20%⁹⁾)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172사(90.53%)에서 여성이사를 선임하였고, 여성이사의 수 또한 35명(3.16%¹⁰⁾)에서 219명(15.36%)까지 증가하여 분석기간 동안의 증가폭이 미적용 기업 대비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개정 자본시장법으로 인한 여성이사 선임 의무화가 여성이사 선임의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시사함
 - 또한, 미적용 기업에 비해 적용 대상 기업에서 선임된 여성이사의 직위가 대부분 사외이사인 점도 특징적임
 - 이처럼 최근 신규 선임된 여성이사가 대부분 사외이사인 까닭은, 주로 내부 인사로 기용되는 사내이사직의 특성상 기업 내부의 여성 인재풀(pool)이 한정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자본시장법 준수가 어려운 사유로서 ‘승진시킬만한 여성임원 후보군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¹¹⁾,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 다수의 기업이 여성 사내이사 선임 대신 외부 여성 인사의 사외이사 영입을 추진한 것으로 풀이됨

[표 2] 미적용 기업의 여성이사 선임 현황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분기
기업 수(사)	1,978	2,075	2,159	2,269	2,152
여성 등기이사를 선임한 기업 수(사)	379	405	436	485	505
여성 등기이사 선임 기업 비율(%)	19.16%	19.52%	20.19%	21.38%	23.47%
기업의 등기이사 수(명)	10,085	10,517	10,956	11,511	11,083
여성 등기이사 수(명)	442	483	542	615	629
여성 등기이사 비율(%)	4.38%	4.59%	4.95%	5.34%	5.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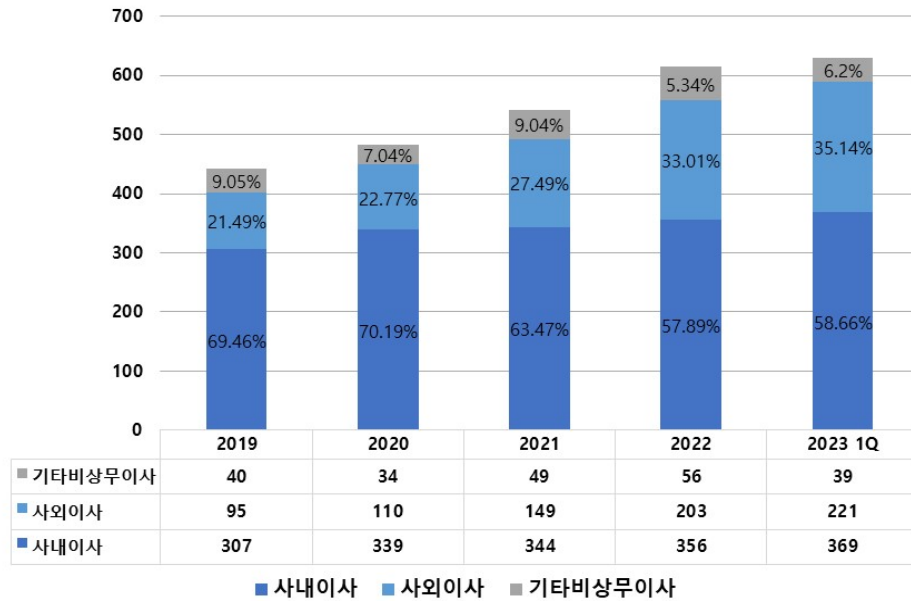
출처: 각 회사 2019~2022년 사업보고서, 2023년 1분기 보고서, DART

9)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기업의 20%를 의미함

10)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기업의 전체 등기이사 수의 3.16%를 의미함

11) ESG경영 관점에서 여성임원 할당제 의미와 과제, 임희정, 젠더리뷰 61호, 2021.06.

[그림 2] 미적용 기업의 직위별 여성이사 수 및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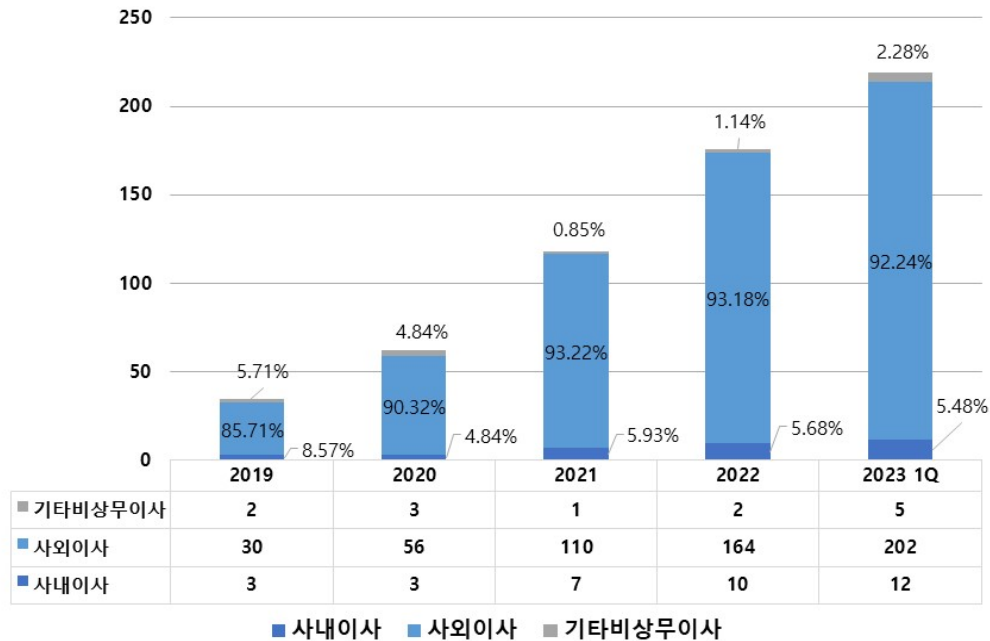
출처: 각 회사 2019~2022년 사업보고서, 2023년 1분기 보고서, DART

[표 3] 적용 대상 기업의 여성이사 선임 현황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분기
기업 수(사)	150	155	171	177	190
여성 등기이사를 선임한 기업 수(사)	30	52	100	150	172
여성 등기이사 선임 기업 비율(%)	20%	33.55%	58.48%	84.75%	90.53%
기업의 등기이사 수(명)	1,109	1,171	1,265	1,332	1,426
여성 등기이사 수(명)	35	62	118	176	219
여성 등기이사 비율(%)	3.16%	5.29%	9.33%	13.21%	15.36%

출처: 각 회사 2019~2022년 사업보고서, 2023년 1분기 보고서, DART

[그림 3] 적용 대상 기업의 여성이사 수 및 구성 비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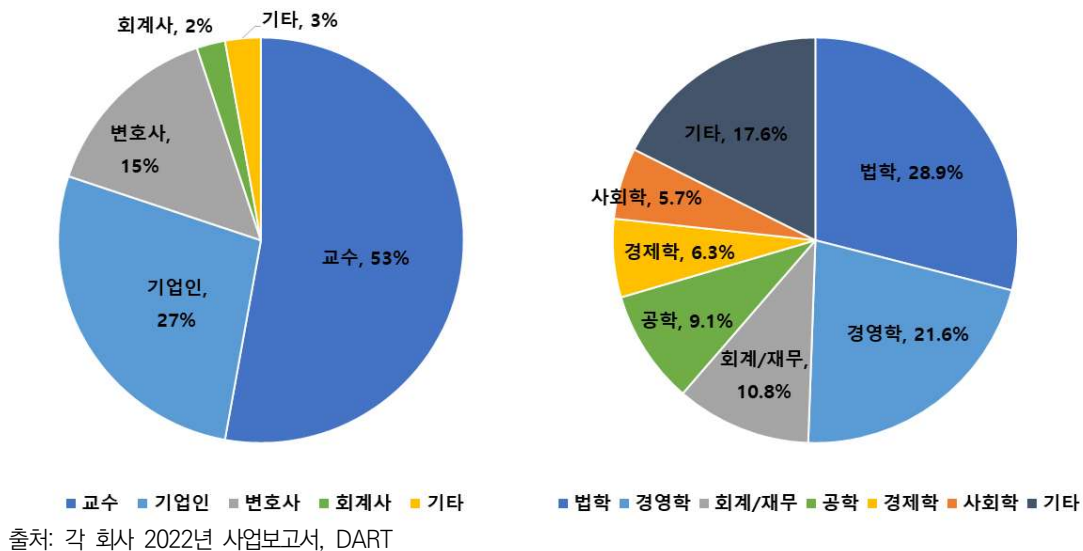
출처: 각 회사 2019~2022년 사업보고서, 2023년 1분기 보고서, DART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 기업의 여성이사 선임 세부 현황

- 2022년 말 기준으로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 기업은 177사이며, 이들 기업 중 2023년 정기 주주총회 이전까지 여성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기업은 27사임
 - 위 27사 중 10사는 2023년 정기 주주총회 종료 시까지 여성이사를 한 명도 선임하지 않아, 투자자들은 이들 기업의 향후 여성이사 선임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자본시장법상 여성이사 선임 의무 부과 기준은 자산 규모(금융회사의 경우 자본 규모)이므로, 자산총액 규모가 2조 원에 가까운 기업들의 여성이사 선임 추이도 지켜볼 필요가 있음
 - 2023년 1분기 기준으로 자산총액 1조 5천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인 상장기업은 36사이며, 이 중 11사(30.56%)가 여성이사를 선임함
-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 기업에 선임된 여성이사의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선임된 여성이사의 직위는 사외이사가 가장 많았고, 직업군은 대부분 교수였으며, 전문 분야로는 법학과 경영학 분야가 다수를 차지함
 - (직위) 여성이사 176명 중 사외이사가 164명(93.2%)이고 사내이사과 기타비상무이사는 각각 10명과 2명인 것으로 확인됨
 - (직업) 여성이사의 직업군은 교수, 기업인,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분류되고, 이 중 교수가 93명(52.8%)이고 기업인이 48명(27.3%)이었으며 변호사는 26명(14.8%), 회계사는 4명(2.3%)으로 확인됨

- (전문 분야) 법학을 전문 분야로 하는 여성이사가 51명(28.9%)으로 가장 많았고 경영학이 38명(21.6%), 회계/재무 분야가 19명(9.1%)이었으며, 이 다음으로는 공학, 경제학, 사회학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여성이사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그림 4] 여성이사의 직업/전문 분야별 비중¹²⁾



결론

- 국내 상장사 전체에서 최근 5년 동안 여성이사의 선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남
 -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여성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의무화된 점은 국내 기업의 이사회 내 성별 다양성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기업들에서도 꾸준히 여성이사의 선임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기업들이 이사회 구성 시 이사들의 성별 다양성을 이전보다 중요한 사항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기업의 여성이사 선임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법 적용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한 여성이사의 직위 대부분이 사외이사로 확인됨
 - 해당 기업들에서 사외이사로 여성이사를 선임하는 가장 큰 사유는 자본시장법 준수를 위해 단기간 내 여성임원을 선임할 때, 사내이사보다는 사외이사로 영입하는 것이 더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여성임원 대부분이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현상에 대해, 기업들이 법적 요건을 쉽게 충족하기 위해 성별 외에 다른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여성 사외이사 1인을 형식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¹³⁾

12) 전문분야 중 해당 분야의 전체 대비 비중이 5% 미만인 분야는 기타로 합산하여 계산함

- 따라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자본시장법 개정의 취지대로 이사회 성별 다양성 확보를 통해 이사회 관점의 다양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에 필요한 전문성을 보유한 외부 여성 인사를 확보하는 노력과 함께, 기업의 현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내부의 여성 인재를 육성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한편, 2023년 정기 주주총회 종료 이후에도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 기업 중 10사가 여성 이사를 한 명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여성이사 미선임으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벌금이나 시정명령 등의 구체적인 제재가 규정되지 않아 일부 기업들에서 이사회 성별 다양성을 이사 선임 시 우선적인 고려사항으로 다루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다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글로벌 기관투자자 및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 등에서 이사회 성별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업의 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할 지침을 마련하는 등, 최근 이사회 성별 다양성에 대한 자본 시장의 관심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한 기업 명성 훼손 및 투자 배제 등의 부정적 영향이 기업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함

본 자료는 한국ESG기준원의 의안분석 및 책임투자 서비스와 관련하여 자본시장 전반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자료의 내용은 한국ESG기준원이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ESG기준원은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어떠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 민·형사 책임을 포함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3) 여성이사 할당제의 향후과제, 송지민, 이슈와 논점 제1979호, 2022.08.21.